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성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 회피 목적의 영업 양도·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양수인 등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양수인 등에게까지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자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 등이 지위 승계를 할 때에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또는 위반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률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예정

법률 제 호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나 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건설기계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제9호의2 중 “제24조의2제4항”을 “제2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

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처분의 효과를”을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결혼중개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9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제45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9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골재채취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골재채취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관광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는 요양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확인하거나,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8조제6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3항제4호 중 “제98조제4항”을 “제98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장기요

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확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제6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제1항제4호의2 중 “제37조의4제4항”을 “제37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10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양수인등은”을 “제30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으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를 “이력이 있는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거나, 양도인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3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

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을 “행

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행정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5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산후조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5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문화유산매

매업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 중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를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양수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를 “제46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으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를 “이력이 있는지를 벤처투자회사에 확인하거나, 벤처투자회사의 동의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양수인등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그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1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제7항 중 등록사업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의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등록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등록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등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9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처분의 효과는”을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 상속 또는 분할·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분산에너지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등이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경

찰청장(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처분이 있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한 경우

3.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③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석유정제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석유정제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기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말한다), 사업정지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중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를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로 한다.

제10조제7항 후단 중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를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중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를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제14조”는 “제35조”로 보며”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를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제14조”는 “제35조”로,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며”로 한다.

제20조(「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산업법」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의 기간은 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확인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본문 중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를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을 "「식품위생법」 제39조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업을 양수하거나 영업자와 합병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91조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 제재처분

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6조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야생동물 영업자가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야생동물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확인하거나,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를 “제조업자등”으로, “행정처분의 효과”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로, “행정처분의 절차”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새로운 제조업자등(수입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89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양곡관리법」의 개정)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곡가공업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양곡가공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양곡가공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양식산업발전법」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의 기간은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허가양식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허가양식업자에게 확인하거나, 허가양식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확인하거나, 영화상영관 경영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비디오물제작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위생용품 관리법」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료급여법」의 개정)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는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의료급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거나,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업무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제9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1항 중 “제28조제7항”을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35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처분의 효과”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로, “행정처분의 절차”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제4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본문 중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승계되고”를 “승계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양수하려는 자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확인하거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업무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제7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양수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을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저장사업자가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저장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저장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의3에 따라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가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에게 확인하거나,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8조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를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로,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를 “양수인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양수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행자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대행자에게 확인하거나, 대행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그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2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고관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등록·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을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전기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전기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의 기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말한다), 사유, 진행 중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4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등이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를 제조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6조의4에 따라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피상속인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1항”은 “제45조제2항으로,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제44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계열화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계열화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축산법」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1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11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인증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 요청

2.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기관에 확인하거나, 인증기관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인증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 요청
2.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기관에 확인하거나, 인증기관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이 제4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공시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공시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시기관에 확인 요청
2.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공시기관에 확인하거나, 공시기관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평가

대행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평가대행자에게 확인하거나, 평가대행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

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9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

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을 “양수인등”으로, “양수 또는 합병한 때”를 “양수, 상속 또는 합병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를 “이력이 있는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거나, 양도인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확인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

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상속,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5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확인하거나, 통합허가대행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처분의 효과는”을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양수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제17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사유, 진행 중인 영업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의 효과 승계 제외 및 행정처분 등의 이력 확인에 관

한 적용례) ①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이력 확인 절차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지위 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의 효과의 승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효과의 승계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② (생 략) <신 설>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나 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생략)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건설기계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⑦ ----------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
제4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의2. 제24조의2제6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결혼중개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후단신설>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 ---------- ---------- ----------. 이 경우 제19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9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골재채취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골재채취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관광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업무정지) ① ~ ③ (생략)	제98조(업무정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요양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는 요양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확인하거나,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	⑥ ----------

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 다만, 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② 삭 제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98조제6항----------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확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④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4제6항----------
5.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30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 --- 이력이 있는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거나, 양도인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3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

	인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행정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5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산후조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산후조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

	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75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 ---------- ---------- ----------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 양수인등 ---------- ---------- ---------- ---------- ---------- ---------- ----------.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46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 ---------- ---------- ---------- ---------- ----- 이력이 있는지를 벤처투자회사에 확인하거나, 벤처투자회사의 동의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양수인등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

	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후단신설>	④ ---------- ---------- ---------- ---------- ----------. 이 경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그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의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등록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등록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등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제7항 중 등록사업자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 ---------- ---------- ---------- --------.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 ---------- ---------- --. --- 제11조제9항 ------- ----------

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시정조치) ①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조치) ① ----------.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1. ----------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생략)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 ---------- ---------- ----------.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 상속 또는 분할·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분산에너지사업자(피상속

	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등이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

	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 ---------- ---------- ---------- ----------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처분이 있는 날을 말한
<신 설>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한 경우 3.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신 설>		③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석유정제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석유정제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기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금액을 말한다), 사업정지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

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⑦ ---------- ---------- ---------- ----------. ------ ---------- ---------- ---------- ---------- ---------- ---------- ---------- ---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④ ---------- ---------- ---------- --------. ---------- ---------- ---------- ---------- ---------- ---------- ---------- ---------- ---------- ---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제14조”는 “제35조”로 보며---------- ---------- ---------- ----------

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로 본다.	---------- ---------- ---------- ---------- ---------- ----------.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③ ---------- ---------- ----------. --- ---------- ---------- ---------- ---------- ---------- ---------- ---------- ----------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제14조”는 “제35조”로,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보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

	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 ④ (생 략)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의 기간은 그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확인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관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 ---------- ------. ---------- ---------- ---------- ----------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이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이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식품위생법」 제39조 또는 ---------- ---------- ---------- ---------- ---------- ---------- ---------- ---------- ---------- ---------- ---------- ---------- ---------- ---------- ---------- ---------- ----------.

다만, 양수인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신 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업을 양수하거나 영업자와 합병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91조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6조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

	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 ⑤ (생 략)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야생동물 영업자가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야생동물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확인하거나,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와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제조업자등-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 ---------- ---------- ----------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제조업자등(수입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상

	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신 설>	2.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신 설>	②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곡가공업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양곡가공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양곡가공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

	급하여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⑤ (생 략)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 승계의 기간은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허가양식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허가양식업자에게 확인하거나, 허가양식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⑨·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 ⑤ (생 략)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확인하거나, 영화상영관 경영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② (생 략)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비디오물제작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⑨ (생 략)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10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 ⑥ (생 략)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는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의료급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거나,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업무정지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업무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⑨ ----------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단서신설>	---------- ---------- ---------- ---------- ---------- ----------. 다만, 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합병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28조제9항--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 ---------- ---------- -----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 ---------- ---------- ---------- ----------. ---------- ---------- ---------- ---------- ---------- ---------- ------.
<신 설>	② 제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 승계되며----------. ---------- 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양수하려는 자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확인하거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업무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 ---------- ---------- ---------- ---------- ---------- -----. 다만, 제5항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양수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1조(처분효과의 승계) ① ---------- ----------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②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저장사업자가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절차

	가 진행 중인지 및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저장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저장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13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3조의3에 따라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가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에게 확인하거나,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받은 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8조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 ----------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 양수인등에 대하여 ---------- ---------- ----------. ---- 양수인등---------- ---------- ---------- ---------- ---------- ----------

아니한다.	------.
<신 설>	②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행자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대행자에게 확인하거나, 대행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 ③ (생략)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후단 신설>	④ ---------- ---------- ---------- ---------- ---------- ---------- ---------- ---------- ---------. 이 경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그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고관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등록·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① ---------- ---------- ---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신 설>	②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전기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전기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의 기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말한다), 사유, 진행 중인 사업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5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4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등이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등에게 확인하거나, 제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4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6조의4에 따라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피상속인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

	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④ ---------- ---------- ----------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이 경우 “제45조제1항”은 “제45조제2항으로,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계열화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계열화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단서 신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

	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인증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 요청 2.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기관에 확인하거나, 인증기관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

	기관이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인증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기관에 확인 요청 2.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인증기관에 확인하거나, 인증기관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 ④ (생 략)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이 제4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1.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공시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공시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시기관에 확인 요청 2.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공시기관에 확인하거나, 공시기관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생 략) <신 설>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평가대행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평가대행자에게 확인하거나, 평가대행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영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 ---------- ---------- ---------- ---------- ---------- ---------- ---------- ---------- ---------- --------. ---------- ---------- ----------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6항---------- ----------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4조(과태료) ①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6항---------- ----------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 ---------- ---------- ---------- ---------- ---------- ---------- ---------- ---------- ---------- ---------- ---------- ---------- ----------. ----- 양수인등---------- ---------- ---------- ---- 양수, 상속 또는 합병한 때---------- ----------.

②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 ---------- ---------- 이력이 있는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거나, 양도인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확인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 ③ (생략)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상속,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

	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확인하거나, 통합허가대행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생 략)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 ----------
<신 설>	③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양수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제17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사유, 진행 중인 영업정지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446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연 락 처	(044) 205 - 5166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2258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1365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29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2276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6396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연 락 처	(02)-2100-6377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51)-773-516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4) 204 - 77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3)-719-1532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119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901